

선	기관외 장
람	

시보

제32호(호외) 2022. 8. 18.(목)

고시

광양시 고시 제2022-268호 광양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제17호) 공원조성계획 결정
(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공고

광양시 공고 제2022-1648호 광양 도시계획시설(도로, 수변공원) 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3

조례

광양시 조례 제1922호 광양시 여수·순천 10·19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6
 광양시 조례 제1923호 광양시 여순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4
 광양시 조례 제1924호 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8
 광양시 조례 제1925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광양시 소관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3
 광양시 조례 제1926호 광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48
 광양시 조례 제1927호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52
 광양시 조례 제1928호 광양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62
 광양시 조례 제1929호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67
 광양시 조례 제1930호 광양시 삼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70
 광양시 조례 제1931호 광양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 74

광양시 조례 제1932호 광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77
광양시 조례 제1933호 광양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5
광양시 조례 제1934호 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92
광양시 조례 제1935호 광양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96
광양시 조례 제1936호 광양시 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104
광양시 조례 제1937호 광양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115
광양시 조례 제1938호 광양시의회 기본 조례	120
광양시 조례 제1939호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41
광양시 조례 제1940호 광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61
광양시 조례 제1941호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68
광양시 조례 제1942호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	175
광양시 조례 제1943호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179

회 관										
--------	--	--	--	--	--	--	--	--	--	--

▶ 발행 : 광양시 ▶ 편집 : 홍보소통실 (☎ 797-2323, 행정2713)

광양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제17호)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광양시 도이동 산3번지 일원의 광양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 사항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 제40호)의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 사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18일

광 양 시 장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	17	성황공원	도이동 산3 일원	526,929.7	-	526,929.7	1991.10.12

나. 공원조성계획 세부내역 결정(변경) : 세부시설 결정 조서(붙임)

시설구분	부지면적(㎡)		건축 면적(㎡)		건축 연면적(㎡)		비 고 (부지면적)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526,929.7	526,929.7	9,505	9,529	24,028	24,052	-
시설면적 소계	161,506	167,416	9,505	9,529	24,028	24,052	증) 5,910
기반시설	102,077	103,708	-	-	-	-	증) 1,631
휴양시설	4,002	3,464	92	92	87	87	감) 538
교양시설	-	535	-	-	-	-	증) 535
유희시설	-	3,798	-	-	-	-	증) 3,798
운동시설	19,731	24,127	9,413	9,413	23,941	23,941	증) 4,396
편익시설	35,696	31,784	-	24	-	24	감) 3,912
공원관리시설	-	-	-	-	-	-	-
녹 지	365,423.7	359,513.7	-	-	-	-	감) 5,910

다. 변경사유서

도면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7	성황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면적 신설 및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시설면적 : 증) 1,631㎡ - 휴양시설면적 : 감) 538㎡ - 교양시설면적 : 증) 535㎡ - 유희시설면적 : 증) 3,798㎡ - 운동시설면적 : 증) 4,396㎡ - 편익시설면적 : 감) 3,912㎡ - 편익시설 건축 및 연면적 : 증) 24㎡ • 녹지면적 변경 : 감) 5,9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황근린공원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특화된 근린공원 조성 및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을 변경코자 함

※ 세부시설 조서

시설 구분	변경 구분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물				건물 동수		증감면적(㎡)	비고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526,929.7	526,929.7	9,505	9,529	24,025	24,052	3동	4동	-	
시설 소계				161,506	167,416	9,505	9,529	24,025	24,052	3동	4동	증)5,910	시설율 31.7%
기반시설	변경	소	계	102,077	103,708							증)1,631	
	변경	-	도	101,118	102,605							증)1,487	
	변경	라	다목적광장	959	1,103							증)144	
휴양시설	변경	소	계	4,002	3,464	92	92	84	87	1동	1동	감)538	
	변경	가	숲속쉼터	1,488	1,350							감)138	
	-	가-3	숲속쉼터1	232	232							-	
	-	가-4	숲속쉼터2	314	314							-	
	-	가-5	숲속쉼터3	461	461							-	
	폐지	가-6	숲속쉼터4	340	-							감)340	
	변경	가-7	숲속쉼터5	45	154							증)109	
	변경	가-8	숲속쉼터6	50	189							증)139	
	폐지	가-9	숲속쉼터7	46	-							감)46	
	-	마	어사박문수쉼터	598	598							-	
	신설	차	쉼터 및 광장	-	1,163							증)1,163	
	-	카	경로당	353	353	92	92	87	87	1동	1동	-	
교양시설	신설	소	계	-	535							증)535	
	신설	나	유아숲체험원	-	535							증)535	
유희시설	신설	소	계	-	3,798							증)3,798	
	신설	타	숲놀이터	-	2,335							증)2,335	
	신설	파	통합놀이터	-	1,463							증)1,463	
운동시설	변경	소	계	19,731	24,127	9,413	9,413	23,941	23,941	2동	2동	증)4,396	
	-	사	실내수영장	8,012	8,012	4,500	4,500	6,000	6,000	1동	1동	-	
	-	아	다목적 문화체육관	8,188	8,188	4,913	4,913	17,941	17,941	1동	1동	-	
	변경	자	풋살장	3,531	3,204							감)327	
	신설	바	인라인 스케이트장	-	4,723							증)4,723	
편의시설	변경	소	계	35,696	31,784	-	24	-	24	-	1동	감)3,912	
	변경	다	주차장	32,615	31,760							감)855	
	-	다-2	주차장2	6,760	6,760							-	
	변경	다-3	주차장3	23,930	23,075							감)855	
	-	다-4	주차장4	1,925	1,925							-	
	폐지	차	힐링센터	3,081	-							감)3,081	
	신설	하	화장실	-	24	-	24	-	24	-	1동	증)24	
	-	①	육교1	L=31m	L=31m								
	폐지	②	육교2	L=70.6m	-								
신설	⑤	육교3	-	L=85m									
공원관리시설	-	소	계	-	-								
	-	③	게시판	3개소	3개소								
	-	④	상징조형물	1개소	1개소								

라. 공원조성계획 관계도서 :계재 생략(광양시청 공원과 비치)

마. 세부시설 조서: 붙임 참조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공원과(☎061-797-47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양 도시계획시설(도로, 수변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광양시 다압면 금천리 1545-1번지 일원의 광양 도시계획시설(도로, 수변공원)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8일

광 양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광양시 다압면 금천리 1545-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광양 도시계획시설(도로, 수변공원) 사업
 - 명 칭 : 광양 4대계곡 명소화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수변공원)사업
3. 사업 시행면적 또는 규모
 - 사업면적: 11,626㎡(도로: 2,984㎡, 공원: 8,642㎡)
 - 건축규모: 85.1㎡(4동)
[샤워실 21㎡(1동), 취사실 21.6㎡(1동), 관리실 12.5㎡(1동), 화장실 30㎡(1동)]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광양시장(관광과장)
 - 주 소 :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5. 사업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착수 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준공 예정일 : 2022.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별첨)
7. 관계도서 : 게재 생략(광양시청 도시재생과 비치)
8. 열람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22. 8. 18. ~ 2022. 9. 1.
 - 장 소 : 광양시청 관광과, 도시재생과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관광과(☎061-797-1950) 및 도시재생과(☎061-797-284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 소로2-653호선

연 번	토지조서		지 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리	지 번				주 소	성명	주 소	성 명	
합 계				922,458	2,984					
1	금천	1528-2	도	36	2	-	윤현병	-	-	미등기
2	금천	1544-1	답	277	54	광양시 다압면 금천리 1810-1	서영애	-	-	
3	금천	1545	답	2,038	76	-	광양시	-	-	
4	금천	1545-1	답	1,401	2	-	광양시	-	-	
5	금천	1546-1	답	364	58	-	광양시			
6	금천	1546-3	도	132	132	경남 하동군 악양면 봉대리 53	신인선			
7	금천	1546-4	도	33	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봉대리 53	신인선			
8	금천	1546-5	도	354	24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봉대리 53	신인선			미등기
9	금천	1547-1	답	1,673	94	-	광양시			
10	금천	1547-2	도	552	508	-	광양시			
11	금천	1548-1	답	2,033	13	-	광양시			
12	금천	1548-2	도	83	79	-	광양시			
13	금천	1551-2	전	89	10	-	광양시			
14	금천	1551-3	대	182	2	전남 광양시 다압면 금천리 1551-3	한점례	다압면 고서리 1305-2	다압농업협동조합	근저당
15	금천	1551-5	도	36	36	전남 광양시 다압면 금천리 122	정인표			
						전남 광양시 다압면 금천리 1760	김기문			
16	금천	1552-1	답	179	46	-	광양시			
17	금천	1554-2	도	20	20	-	광양시			
18	금천	1810-2	도	136	67	전남 광양시 다압면 금천리 2372	김상치			
19	금천	1810-3	도	1,181	2	-	전라남도			
20	금천	1810-4	도	51	13	전남 광양시 다압면 금천리 2372	김상치			
21	금천	2799-3	도	856	18	-	국토교통부			
22	금천	2799-4	도	771	208	-	국토교통부			
23	금천	2815	천	908,380	205	-	국토교통부			
24	금천	산349-1	임	753	664	-	광양시			
25	금천	산350-1	도	489	96	-	전라남도			
26	금천	산350-2	임	359	303	-	광양시			

- 수변공원 제86호

연번	토지조서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리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합계				918,162	8,642					
1	금천	1544	답	50	48	-	광양시	-	-	
2	금천	1544-1	답	277	223	광양시 다압면 금천리 1810-1	서영애	-	-	
3	금천	1545	답	2,038	1,962	-	광양시	-	-	
4	금천	1545-1	답	1,401	1,399	-	광양시	-	-	
5	금천	1545-2	답	75	75	-	광양시	-	-	
6	금천	1546-1	답	364	306	-	광양시	-	-	
7	금천	1547-1	답	1,673	1,579	-	광양시	-	-	
8	금천	1548-1	답	2,033	2,020	-	광양시	-	-	
9	금천	1549	답	55	55	-	광양시	-	-	
10	금천	1549-1	답	24	24		광양시			
11	금천	1551-2	전	89	79		광양시			
12	금천	1552-1	답	179	133		광양시			
13	금천	2799-4	도	771	399		국토교통부			
14	금천	2815	천	908,380	309		국토교통부			
15	금천	산349-1	임	753	31		광양시			

광양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7. 29.)에서 의결된 **광양시 여수·순천
10·19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8월 18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1922호

붙임 : 광양시 여수·순천 10·19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광양시 여수·순천 10·19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순천 10·19사건 당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지역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함으로써 평화와 인권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수·순천 10·19사건”이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여수·순천 10·19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수형자(受刑者)로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

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여순사건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4. “위령사업”이란 명칭과 내용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추모사업, 위령시설 조성, 유적 조사, 채록 및 기타 제반 교육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및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은 희생자 및 유족 등이 광양시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시장이 승인한 여순사건 유족회에서 요청하는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희생자 조사, 유적지 조사와 보존 및 위령 사업
2.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수집, 채록, 백서 및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 및 여순사건 바로 알기 교육
4. 희생자 및 유족 위로·복지 사업
5. 여순사건을 내용으로 하는 문화, 예술 등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시장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여수·순천 10·19사건민관협의회 설치) 시장은 여수·순천 10·19 사건 위령사업 등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광양시 여수·순천 10·19사건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희생자 위령사업 관련 행·재정에 관한 사항
3.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수·순천 10·19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여수·순천 10·19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족 대표
3. 시민·사회단체 또는 각 분야별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4. 여수·순천 10·19사건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 선정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협회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한 경우

6. 위원이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협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계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 등) ①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여수·순천 10·19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여수·순천 10·19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4조(실무위원회 구성) ① 각종 위령사업 및 지원사업 등의 실무업무 추진을 위해 협의회 내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장은 협의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실무위원은 위원 중에 실무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실무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실무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무위원회를 소집하여 각종 위령사업 및 지원사업 등의 기획·추진 등 실무업무를 추진하며, 회의 결과는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 중인 지원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양시 여순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 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광양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7. 29.)에서 의결된 **광양시 여순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8월 18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1923호

붙임 : 광양시 여순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광양시 여순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광양시 여순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양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
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으로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책임을
입증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명칭과 내용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위령시설
구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인 희생

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은 민간인 희생자가 광양시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시장이 승인한 사단법인 한국전쟁 희생자 유족회 등에서 요청하는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합동 위령제, 위령시설 설치 등 위령사업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수집 및 간행물 발간
3. 평화 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시장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 중인 지원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양시 여순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 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광양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7. 29.)에서 의결된 **광양시 규제개혁위
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8월 18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1924호

붙임 : 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제12조로 하고,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규제입증의 요청) 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규제(광양시 소관 자치 법규에 규정된 규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심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기존규제의 재검토) 규제개혁 담당 부서장은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기존규제의 심사)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라 규제입증의 요청을 받은 경우
2. 제10조에 따라 기존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 소관 부서장은 기존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③ 소관 부서장이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는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9조(규제입증의 요청) 누구든지 <u>위원회에 기존규제(광양시 소관 자치법규에 규정된 규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심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u>
<u><신 설></u>	제10조(기존규제의 재검토) 규제 개혁 담당 부서장은 기존규제의 <u>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u>
<u><신 설></u>	제11조(기존규제의 심사)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9조에 따라 <u>규제입증의 요청을 받은 경우</u> 2. 제10조에 따라 기존규제를 <u>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u>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제9조 (생략)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
소관 부서장은 기존규제가 유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기존규제
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③ 소관 부서장이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는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

제12조 (현행 제9조와 같음)

광양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7. 29.)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정에 따른 광양시 소관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8월 18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1925호

붙임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광양시 소관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광양시 소관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광양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의 개정) 광양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2조(「광양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의 개정) 광양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제127조”를 “제142조”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법 제4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4조 중 “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각각 “법 제4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법 제4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법 제4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2조제1항”을 “법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 중 “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법 제4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3조(「광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광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개정)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114조”를 “법 제127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4조제3항·제5항”을 “제7조제1항·제3항·제4항”으로 한다.

제6조(「광양시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 광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별표 2의 근거 및 적용법률란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제7조(「광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90조”를 “「지방자치법」 제102조”로 한다.

제8조(「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130조”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130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으로 한다.

제9조(「광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의 개정) 광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를 “「지방자치법」 제5조”로 한다.

제10조(「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를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로 한다.

제11조(「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의 개정)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61조 제2항”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4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1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법 제104조제3항”을 “법 제117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법 제39조제1항제7호”를 “법 제47조제1항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44조제2항”을 “법 제161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법 제39조제1항제7호”를 “법 제47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법 제39조제1항제7호”를 “법 제47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12조(「광양시 지능정보화 조례」의 개정) 광양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37조”를 “지방자치법」 제154조”로 한다.

제13조(「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으로 한다.

제14조(「광양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의 개

정) 광양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39조”를 “「지방자치법」 제47조”로 한다.

제15조(「광양시 읍·면·동 풍물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읍·면·동 풍물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를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로 한다.

제16조(「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의 개정)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7조(「광양시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광양시 야

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40조”를 “「지방자치법」 제157조”로 한다.

제18조(「광양시 동네체육시설 관리 조례」의 개정) 광양시 동네체육

시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지방자치법」 제12조”를 “「지방자치법」 제16조”로 한다.

제19조(「광양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제20조(「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조”를 “「지방자치법」 제13조”로 한다.

제21조(「광양시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광양시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제22조(「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제1조(「광양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 기금의 운용·관리의 공공성과 효율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9조----- ----- ----- ----- ----- ----- -----.

제2조(「광양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라는 광양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광양시 각 행정기구에서 누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기본 사항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 ----- ----- ----- ----- ----- -----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예산“이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무처리 시점에서 앞으로 편성할 예산이 아닌, 시장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7조에 따라 편성하여 광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³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 6. (생략)

제3조(적용범위) ①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⁴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

-----.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 「지방자치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142조-----

-----.

4. ~ 6.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① -----

-- 법 제47조제1항제8호-----

-----.

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의
위원회 심의 전에 그 소관부서
의 장으로 하여금 예산에 관련
되는 경우 기획예산실장, 공유재
산 관리에 관련되는 경우 회계
과장과 사전협의 하도록 해야
한다.

② (생략)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사후 그와 관련
되는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4
2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10조(준용) 법 제39조제1항제8
호에 따른 의안에 관하여 이 조
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
항은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
·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광양시의회 회의 규칙」 등에
따른다.

조제1항제8호-----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사후관리) -----

----- 법 제51
조제1항-----
-----.

1. ~ 4. (현행과 같음)

제10조(준용) 법 제47조제1항제8
호-----

제3조(「광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 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지방세 평균 세입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p> <p>2. 3. (생략)</p> <p>②·③ (생략)</p>	<p>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 ----- ----- ----- ----- ----- ----- ----- ----- -----</p> <p>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 ----- ----- ----- ----- -----</p> <p>2. 3.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제4조(「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 -----</p>

<p>정」에 따라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광양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위탁함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 ----- ----- ----- ----- -----.</p>
--	---

제5조(「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동지역은 도시보건지소, 통합보건지소), 읍·면·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p> <p>② ~ ④ (생략)</p> <p>제12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p>	<p>제6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 ----- ----- -----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2조(설치) ① 법 제127조----- ----- ----- -----.</p>

<p>② (생략)</p> <p>제15조(설치) ①법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4조제3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을 설치한다.</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5조(설치) ①----- ----- 제7조제1항·제3항·제4항----- --.</p> <p>② (현행과 같음)</p>
--	--

제6조(「광양시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광양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의회사무국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17조 ----- ----- ----- ----- ----- -----.</p>

제7조(「광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직장</p>	<p>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 ----- -----</p>

<p>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지방자치법」 제90조에 따른 지방의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p> <p>2. (생략)</p> <p>②·③ (생략)</p>	<p>----- ----- ----- ----- ----- ----- ----- ----- ----- -----</p> <p>1. 「지방자치법」 제102조----- ----- -----</p> <p>2.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	--

제8조(「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광양시가 설치하는 각종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p>	<p>제1조(목적) ----- - 「지방자치법」 제130조----- ----- ----- ----- ----- -----</p> <p>제3조(적용 범위) ① ----- ----- -----</p>

<p>1. (생략)</p> <p>2.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p> <p>② (생략)</p> <p>제6조(유사위원회의 활용 등) ① 시장은 담당부서 또는 관련부서에 설치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사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유사한 위원회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1. (현행과 같음)</p> <p>2. 「지방자치법」 제130조-----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유사위원회의 활용 등) ① - ----- ----- -----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 ----- ----- -.</p> <p>② (현행과 같음)</p>
--	---

제9조(「광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 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5조----- ----- ----- -----.</p>

제10조(「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따라 광양시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 ----- ----- ----- ----- -----.

제11조(「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계법령이나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광양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통일적인 정의와 설치 기준 및 절차, 설치 및 관리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그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지방자치법」 제161조제2항-----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공공시설“이란 광양시장(이	제2조(정의) ----- ----- -. 1. (현행과 같음) 2. -----

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계법령이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4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례로 설치·관리하는 영조물을 말한다.

3. 4. (생략)

제4조(설치기준)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1. 2. (생략)

3. 공공시설의 관리업무가 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 위탁이 가능한 경우

제5조(설치절차) ①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설치한다.

1. (생략)

2.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의회의 의결을 미리 받은 공공시설은 그 설치 완료 다음 날부터 시행되는 조례를 제정한다.

-----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1조제2항-----

-----.

3. 4. (현행과 같음)

제4조(설치기준) -----

-----.

1. 2. (현행과 같음)

3. ----- 법 제117조제3항-----

제5조(설치절차) ① -----

-----.

1. (현행과 같음)

2. 법 제47조제1항제7호-----

3. 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공공 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미리 제정·시행하는 공공시설은 해당 조례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고 그 설치 완료 다음 날부터 운영·관리가 적용되는 부칙을 조례에 규정한다.

② (생략)

③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계획에 관한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설치계획의 목적 또는 설치장소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거나 시설물 면적 또는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공공시설 설치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② (생략)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른

--.

3. 법 제161조제2항-----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7조제1항제7호-----

-----.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1. 법 제47조제1항제7호-----

설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 6. (생략) ④ (생략)	----- 2. ~ 6.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

제12조(「광양시 지능정보화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6조(행정정보의 제공) ①·② (생략)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 3. (생략) ④ (생략)	제16조(행정정보의 제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지방자치법」 제154조----- ----- ----- ----- 1.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광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23조(위탁관리) ① 광양시장은 전통시장·시장 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3조(위탁관리) ① ----- ----- ----- -----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 -----

<p>「광양시 주차장 조례」,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p> <p>②·③ (생략)</p>	<p>----- ----- ----- ----- ----- ----- -----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	---

제14조(「광양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15조(시의회 의결) ① 시장은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광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p> <p>② (생략)</p>	<p>제15조(시의회 의결) ① ----- ----- ----- 「지방자치법」 제47조----- ----- -----.</p> <p>② (현행과 같음)</p>

제15조(「광양시 읍·면·동 풍물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의</p>	<p>제1조(목적) -----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p>

규정에 따라 광양시의 정체성 확립과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특화된 풍물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광양시 읍·면·동 풍물단을 육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 -----
--	--

제16조(「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법」,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광양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과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지방자치법」 제159조 ----- ----- ----- ----- -----

제17조(「광양시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② (생 략)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징수 및 이의 신청 절차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하여 수행 할 수 있다.	----- -----
------------------------------	----------------

제20조(「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 법」 제9조 및 「여객자동차 운 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광양시 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 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위 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 법」 제13조 ----- ----- ----- ----- ----- -----

제21조(「광양시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 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9 조, 「농업·농촌기본법」 제35 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 에 의거하여 광양시가 설치하는 광양농산물수출물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지방자치법」 제161조----- ----- ----- -----

제22조(「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31조(분석평가의 시기)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p> <p>1. 2. (생략)</p> <p>3.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 광양시의회 제출 전</p>	<p>제31조(분석평가의 시기) ----- ----- ----- -----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p>

광양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7. 29.)에서 의결된 **광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8월 18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1926호

붙 임 : 광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광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 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하여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 및 취소) ①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절차 등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시장이 현지 심사 후 지정 여부를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민·관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지실사·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③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연 1회 실시 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재지정 또는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 할 수 있다.

제4조(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광양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사용료 등의 요금 보조
4. 고객 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 점검 보조
6. 소상공인 특례보증 우선 추천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자의 협조) ①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6조제1항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위한 현지 실사 또는 제6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현황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가모니터요원(이하 “모니터요원”

이라 한다)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니터요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점검
3. 가격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모니터요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광양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7. 29.)에서 의결된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8월 18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1927호

붙 임 :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양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발행, 운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다만,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유통지역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상품권의 발행)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 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형태의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품권 발행시 위조·변조 등 부정 발행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조폐공사법」에 따른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 기관과 제조계약을 체결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③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법 제4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상품권의 종류는 카드형(전자적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하고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1만원권
2. 5만원권
3. 10만원권
4. 30만원권
5. 50만원권
6. 전자화폐(카드형, 모바일 등)

⑤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품권의 발행권자
2. 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
3. 상품권의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와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기간
2. 의무이행 사항
3. 그 밖에 환전 한도, 판매 및 환전 수수료 등 상품권 판매대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의 업무실적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유통 내용(상품권의 입고·판매·회수 및 폐기 등)을 매일 처리하여 시장이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상품권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

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 다만,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 내에 입점해 있으면서 별도 법인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지역농업협동조합 하나로마트, 지역원예농업협동조합 로컬푸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④ 가맹점이 소재지 등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그 변경 사실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가맹점이 폐업 또는 6개월 이상의 휴업 등의 사유로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해지하려는 날부터 14일 전 까지 시장에게 가맹점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등록의 해지 사실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가맹점의 자격 요건)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시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사업장일 것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것

제9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상품권 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품권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품권 할인(캐시백) 판매의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이내를 말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100분의 5이내를 추가 할인할 수 있으며, 추가 할인 기간은 할인 개시 후 1개월 이내로 한다.

2. 상품권을 개인이 구매하는 경우에는 그 구매 금액이 월 100만원, 연 1,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할인 금액은 상품권 결제 후 캐시백 형태로 지원한다.

③ 시장은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금액,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상품권 발행 및 운영 위탁)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한다.

1. 상품권 발행·유통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상품권 발행·유통 시스템의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위탁의 절차 및 판매대행점에 대한 지휘·감독 등에 대하여는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상품권의 잔액 환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제13조(상품권의 재발급) 상품권 소지자는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상품권이 훼손되는 등의 사유로 그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만큼에 상응하는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양사랑상품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상품권 업무 소관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소상공인 지원 관련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주민, 가맹점, 판매대행점 대표
4. 지역상품권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2. 건강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의 등록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부정유통 신고포상제) ① 시장은 상품권의 부정 유통방지를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가맹점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신고한 내용이 위반사실의 직접적인 근거가 아닌 경우나 신고자와 위반한 가맹점이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포상금은 상품권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한도는 1인당 10만원, 연 50만원으로 한다.

제19조(환수 조치) 시장은 가맹점 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가맹점이 법 제10조제1항제2호가목을 위반한 경우 : 제10조 제3항에 따라 보전받은 금액
2. 사용자가 법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한 자는 제6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한 자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자로 본다.

광양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7. 29.)에서 의결된 **광양시 공유수면 점
용료·사용료 징수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8월 18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1928호

붙 임 : 광양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광양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사용료의 산정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광양시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해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로 정하는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제2조 관련)

구 분	산정방식(단위 : 연간)
<p>1. 잔교(棧橋: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 형태로 만든 구조물)·호안(기슭·둑 침식 방지시설)·소형선 부두(야적장을 포함한다)·방파제·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설치(관로 매설을 포함한다)를 위한 점용·사용[하천·구거부지(溝渠)를 주거용으로 점용·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가. 나목 및 다목을 제외한 인공구조물의 경우 인접한 토지 가격의 100분의 3. 다만, 「도로법」 제68조제3호에 따른 사업(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p> <p>나. 해상 교량의 교각 상판(교각 면적은 제외한다), 해저터널(「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해저케이블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로 한다.</p> <p>다. 케이블카, 전력선 및 로프형 레저시설 등 공유수면과 맞닿지 않는 수면 상부를 점용·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p>
<p>2. 조선용 선가대(선박을 땅 위로 끌어 올려놓을 수 있는 구조물 및 설비) 또는 선박의 수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장안벽(艀裝岸壁), 선거(船渠) 등의 시설물 설치를 위한 점용·사용</p>	<p>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p>
<p>3. 물을 끌어 들이기 위한 점용·사용</p>	<p>가. 전기사업용수 m³/초당 연액 20만원</p> <p>나. 가목 이외 용수</p> <p>관의 지름 100mm 이하: 관의 지름 10mm당 월액 1만원 관의 지름 100mm 초과 200mm 이하: 월액 12만원 관의 지름 200mm 초과 300mm 이하: 월액 16만원 관의 지름 300mm 초과 400mm 이하: 월액 22만원 관의 지름 400mm 초과 500mm 이하: 월액 28만원 관의 지름 500mm 초과 600mm 이하: 월액 38만원 관의 지름 600mm 초과 700mm 이하: 월액 50만원 관의 지름 700mm 초과 800mm 이하: 월액 60만원 관의 지름 800mm 초과: 월 최대 취수 가능량을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하여 1천m³당 200원씩 적용한 금액</p>

	$\text{초당 끌어들이는 물의 양} = \frac{\text{관의 지름}^2 \times \text{관내유속(m/sec)}}{146^2 \times 60}$
4.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매립용·성토용 또는 골재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채취를 위한 점용·사용	<p>가. 시장이 전년도 10월 중에 2회 이상 조사한 가격을 도지사의 조정을 거쳐 고시한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 다만, 해당 조사가격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담당 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2)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가 조사한 가격 3) 골재 관련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이 조사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4)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2개 이상의 가격조사기관에서 산출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p>나.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채취행위가 동시에 어장·어항 또는 항만구역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가목의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0</p>
5. 식물의 재배 또는 벌채를 위한 점용·사용	<p>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다만, 인접한 토지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근의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가격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25까지 낮출 수 있다.</p>
6.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사용	<p>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다만,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사용으로서 그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0.5로 한다.</p>
7. 「광업법」 및 「해저 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광물채취 및 탐사를 위한 점용·사용	<p>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다만, 광물채취행위가 어장·어항 또는 항만구역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로 하되, 광물을 채취할 때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흙·돌·모래·자갈을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로 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가산적용한다.</p>

8. 준설토를 해양에 배출하기 위한 점용·사용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배출해역에 배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준설토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량(m ³)당 100원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한 목적 외의 점용·사용	가. 스케이트장·운동장·수영장·대기장·탈의장·골프장을 위한 점용·사용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 나. 그 밖의 경우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점용·사용에 따른 간접 점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비 고

1. "토지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 공시지가를 말하며, 점용료·사용료 부과·징수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2.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인접한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길이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하여 적용한다.
3. 위 표 제4호가목의 도매가격은 채취지역에서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에 관한 가격조사는 둘 이상의 지역(채취지역 관할 특별자치시·시·군·구를 말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 인접한 특별자치시·시·군·구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시장은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조사가격을 도시사의 조정을 거쳐 고시한다.
4. 점용료·사용료를 정할 때에 1년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일할(日割)로 계산한다.
5. 점용면적에 1m²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m²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시장이 점용료·사용료를 산정한 결과 점용료·사용료가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광양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7. 29.)에서 의결된 **광양시 관광진흥 조
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8월 18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1929호

붙 임 :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관광취약계층의 지원) ① 시장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2.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지원
3. 관광사업자·관광 관련 종사자의 장애인을 포함한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인식개선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관광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18조의3(관광취약계층의 지원)</u></p> <p>① <u>시장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u> <u>2.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지원</u> <u>3. 관광사업자·관광 관련 종사자의 장애인을 포함한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인식개선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u> <u>4. 그 밖에 시장이 관광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p>② <u>제1항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u></p>

광양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7. 29.)에서 의결된 **광양시 섬진강 망덕
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8월 18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1930호

붙임 :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체험시설”을 “공중하강체험시설(이하 “체험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공중하강체험시설(이하 “체험시설”이라 한다)”을 “체험시설”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이용료”를 각각 “시설이용료”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료”를 “시설이용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사용”을 각각 “이용”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정신질환자 및 고소공포증”을 “고소공포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시설이용료”란 <u>체험시설</u>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p> <p>3.·4. (생 략)</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u>공중하강체험 시설(이하 “체험시설”이라 한다)</u>-----.</p> <p>3.·4. (현행과 같음)</p>
<p>제3조(시설운영 및 이용시간) ① 시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u>공중하강체험시설(이하 “체험시설”이라 한다)</u>을 운영하며, 매표 및 입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운영 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다만, 계절 및 기상 상태에 따라 운영 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p> <p>② (생 략)</p>	<p>제3조(시설운영 및 이용시간) ① ----- --- <u>체험시설</u>-----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시설이용료 및 감면) ① (생 략)</p> <p>② 수탁자는 수익 감소 등의 사유로 <u>이용료</u>를 인상할 수 없으며, 홍보 등을 위한 수탁자의 자율적인 <u>이용료</u> 인하는 가능하다.</p> <p>③ ~ ⑤ (생 략)</p>	<p>제4조(시설이용료 및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시설이용료</u> ----- ----- --- <u>시설이용료</u> -----.</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제5조(시설이용료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반환을 원하는 이용자는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시설이용료 반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시설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납부한 시설이용료를 반환한다.

가.·나. (생략)

2. 시장 또는 수탁자의 귀책 사유나 천재지변, 우천으로 체험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② (생략)

제6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서는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 및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

2. ~ 4. (생략)

제5조(시설이용료 반환) ① -----

----- 시설이용료-----

-----.

1. -----
이용 -----

-----.

가.·나. (현행과 같음)

2. -----

-- 이용-----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이용제한) -----

-----.

1. 고소공포증-----

2. ~ 4. (현행과 같음)

광양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7. 29.)에서 의결된 **광양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8월 18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1931호

붙 임 : 광양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

광양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지위원회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농지법」에 따른 광양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광양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및 관할구역

명 칭	관할구역	비고
광양시 농지위원회	동지역	
광양읍, 봉강·옥룡면 농지위원회	광양읍	
	봉강면	
	옥룡면	
옥곡·진상면 농지위원회	옥곡면	
	진상면	
진월·다압면 농지위원회	진월면	
	다압면	

광양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7. 29.)에서 의결된 **광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8월 18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1932호

붙 임 : 광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광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 따라 광양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양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고 광양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먹거리 계획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며 지속가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먹거리”란 시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2. “먹거리 보장”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나이, 성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차별 없이 확보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를 시에 우선 공급하여 소비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4. “먹거리 종합계획”이란 지역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접근, 소비, 재활용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연계되어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먹거리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먹거리가 부족한 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한다.

③ 시민의 먹거리를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다른 지자체와 활발한 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 먹거리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장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등

제6조(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광양시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먹거리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먹거리 보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계층, 어린이·학생,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영양학적 관리가 필요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나. 지역 먹거리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다. 먹거리 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라. 건강한 식문화 형성에 관한 사항

마. 나이, 성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이 없는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먹거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학교, 공공시설 및 공공기관에 지역 먹거리 공급 확대에 관한 사항

나. 지역 먹거리를 활용한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다. 식품 폐기물 축소 및 재활용, 기후변화 대응, 환경부하 감소 등 환경 친화적 농업 확대에 관한 사항

라.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물류·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

3.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 전담부서 운영 및 민관합동 협력 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나. 먹거리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민관협력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7조(먹거리 종합계획 시행) ① 시장은 먹거리 종합계획의 시행 및 평가를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먹거리 종합계획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시민의 먹거리 보장 수준과 지역 먹거리 이용 실태를 매년 1회 조사하여야 하며, 그 밖에 먹거리 종합계획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각종 정책 입안 시 먹거리 종합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아이디어 제안 등) ① 시장은 시 먹거리와 관련된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아이디어 제출 등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아이디어 제안 등은 「광양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도록 한다.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광양시 먹거리 보장 위원회

제10조(먹거리 보장 위원회 설치) 시장은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광양시 먹거리 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 정책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好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마케팅과장, 농업지원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생산자단체, 출하조직, 농업인단체 대표
3. 보건복지, 환경, 소비자 관련 단체의 대표

4. 영양교사, 교사, 교육청 등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지역 먹거리 분야별(생산, 유통, 소비, 복지, 환경 등) 내·외부 전문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 본인 또는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

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먹거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7조(분과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역 먹거리의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③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8조(공청회 등 개최) ① 시장은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7. 29.)에서 의결된 **광양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8월 18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1933호

붙임 : 광양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학생들”을 “지역 대학생”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대출받은 학자금의”를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대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역 대학생”이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고등교육기관(대학원을 제외한다)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미취업자를 말한다.

제4조의 제목 “(지원자격 및 범위)”를 “(지원 대상 및 기간)”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상”을 “지역 대학생”으로, “대한 학자금”을 “대한”으로, “6학기 이하 하위 군 복무로”를 “4학기 이하 하위, 입영 또는 군복무, 임신 또는 출산으로”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역 대학생 중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이자 지원 기간은 졸업한 날부터 최대 2년으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하며, 제7조를 제5조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7조) 중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장학재단에”를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 장학사업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출연금 교부 및 업무를”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의 제목 “(중복지원 방지)”를 “(중복지원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대학생”을 “지역 대학생”으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지원 중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2.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여 지역 대학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이자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학 중 이자 지원 기간 단축에 따른 경과조치) 조례 제4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자 지원 기간은 최대 6학기 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대학생들</u>에게 안정적이고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u>대출받은 학자금의 이자</u>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p> <p>2. (생 략)</p> <p>3. “<u>대학생</u>”이란 <u>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대학원생을 제외한다)</u>을 말한다.</p>	<p>제1조(목적) ----- <u>지역 대학</u> <u>생</u>----- ----- ----- ----- -----.</p> <p>제2조(정의) ----- -----.</p> <p>1. ----- ----- ----- ----- ----- -- <u>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u> <u>대학생에게 대출</u> -----.</p> <p>2. (현행과 같음)</p> <p>3. “<u>지역 대학생</u>”이란 학자금 <u>대출이자 지원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고등교육기관(대학원을 제외한다)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미취업자</u>를 말한다.</p>

제4조(지원자격 및 범위) ① 시장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일 기준으로 부모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1. 임대주택 세입자에 해당하는 학생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권리확보를 위해 거주지로 전입신고한 경우
2. 학교 또는 학교 소재 지방자치단체로 전입해야 교내 장학금 수혜 및 기숙사 입사가 가능한 경우

② 제1항의 대상 중 휴학생에 대한 학자금 이자 지원 기간은 최대 6학기로 하되 군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4조(지원 대상 및 기간) ① 시장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지역 대학생 -----
 대한 -----
 --- 4학기로 하되, 입영 또는
 군복무, 임신 또는 출산으로 --

③ 제1항의 지역 대학생 중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이자 지원 기간은 졸업한 날부터 최대 2년으로 한다.

제5조(중복지원 방지) 다른 기관

- 단체 등으로부터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생은 이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중단) 시장은 이 조례

에 따라 지원을 받은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자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학자

금 대출이자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장학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

----- 지역 대학생-----.

제7조(지원 중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있는 지역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2.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여 지역 대학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이자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업무의 위탁) -----

-----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 장학사업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출연금 교부 및 업무를 ---.

광양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7. 29.)에서 의결된 **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
포한다.

2022년 8월 18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1934호

붙 임 : 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망실하였을”을 “잃어버렸을”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양시 청소년 문화의집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광양시 청소년 문화의집”은 이 조례에 따른 “광양시 광양 청소년 문화의집”로 본다.

【별표 1】

광양시 청소년시설(제3조 관련)

시설명	위 치	규 모	주 요 시 설
광양시 청소년 문화 센터	광양시 광장로 14(중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면 적 : 5,092.45m² - 수련시설 2,009.8m² - 체육관동 3,082.65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련시설 : 소극장, 동아리방, 상담실, 사무실, 음악연습실, 창작공방실 등 ○ 체육관동 :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 샤워실 등
광양시 광양 청소년문화의집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0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면 적 : 1,238.4m² ○ 대지면적 : 2,308.4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카페 및 휴게실, 노래연습실, 댄스연습실, 창작공방, 상담실, 다목적강당, 사무실 등
광양시 금호 청소년문화의집	광양시 희망길 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면 적 : 1,309.67m² ○ 대지면적 : 7,128.8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래연습실, 댄스연습실, 창작공방, 상담실, 다목적 강당, 사무실 등
광양시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	광양시 광장로 14(중동) 광양시청소년문화센터 내	○ 청소년문화센터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상담실, 집단상담실, 심리검사실, 교육실 등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3조(손해배상) ① (생 략)</p> <p>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청소년 시설의 장비 등을 파손 또는 망 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 하 거나 그 손해를 즉시 변상해야 한다.</p> <p>③ · ④ (생 략)</p>	<p>제23조(손해배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없</u> <u>어버렸을</u>----- ----- -----</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별표 1】 광양시 청소년시설(제3조 관련)</p>	<p>【별표 1】 광양시 청소년시설(제3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시설명</th> <th>위 치</th> <th>규 모</th> <th>주 요 시 설</th> </tr> </thead> <tbody> <tr> <td>광 양 시 청 소 년 문화센터</td> <td>광양시 광장로 14(중동)</td> <td>°연 면 적 : 5,092.45㎡ - 수련시설 2,009.8㎡ - 체육관동 3,082.65㎡</td> <td>°수련시설 : 소극장, 동아리방, 상담실, 사무실, 음악연습실, 창작공방실 등 °체육관동 :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 샤워실 등</td> </tr> <tr> <td>광 양 시 청 소 년 문화의집</td> <td>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055</td> <td>°연 면 적 : 1,238.4㎡ °대지면적 : 2,308.4㎡</td> <td>°북카페 및 휴게실, 노래연습실, 댄스연습실, 창작공방, 상담실, 다목적강당, 사무실 등</td> </tr> <tr> <td><신 설></td> <td><신 설></td> <td><신 설></td> <td><신 설></td> </tr> <tr> <td>광 양 시 청 소 년 상담복지 센 터</td> <td>광양시 광장로 14 (중동) 광양시청소년 문화센터 내</td> <td>°청소년문화센터 내</td> <td>°사무실, 상담실, 집단상담실, 심리검사실, 교육실 등</td> </tr> </tbody> </table>	시설명	위 치	규 모	주 요 시 설	광 양 시 청 소 년 문화센터	광양시 광장로 14(중동)	°연 면 적 : 5,092.45㎡ - 수련시설 2,009.8㎡ - 체육관동 3,082.65㎡	°수련시설 : 소극장, 동아리방, 상담실, 사무실, 음악연습실, 창작공방실 등 °체육관동 :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 샤워실 등	광 양 시 청 소 년 문화의집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055	°연 면 적 : 1,238.4㎡ °대지면적 : 2,308.4㎡	°북카페 및 휴게실, 노래연습실, 댄스연습실, 창작공방, 상담실, 다목적강당, 사무실 등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광 양 시 청 소 년 상담복지 센 터	광양시 광장로 14 (중동) 광양시청소년 문화센터 내	°청소년문화센터 내	°사무실, 상담실, 집단상담실, 심리검사실, 교육실 등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시설명</th> <th>위 치</th> <th>규 모</th> <th>주 요 시 설</th> </tr> </thead> <tbody> <tr> <td>광 양 시 청 소 년 문화센터</td> <td>광양시 광장로 14 (중동)</td> <td>°연 면 적 : 5,092.45㎡ - 수련시설 2,009.8㎡ - 체육관동 3,082.65㎡</td> <td>°수련시설 : 소극장, 동아리방, 상담실, 사무실, 음악연습실, 창작공방실 등 °체육관동 :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 샤워실 등</td> </tr> <tr> <td>광 양 시 청 소 년 문화의집</td> <td>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055</td> <td>°연 면 적 : 1,238.4㎡ °대지면적 : 2,308.4㎡</td> <td>°북카페 및 휴게실, 노래연습실, 댄스연습실, 창작공방, 상담실, 다목적강당, 사무실 등</td> </tr> <tr> <td>광 양 시 청 소 년 문화의집</td> <td>광양시 금호광양시 청 소 년 문화의집 54</td> <td>°연 면 적 : 1,309.67㎡ °대지면적 : 7,128.8㎡</td> <td>°노래연습실, 댄스연습실, 창작공방, 상담실, 다목적강당, 사무실 등</td> </tr> <tr> <td>광 양 시 청 소 년 상담복지 센 터</td> <td>광양시 광장로 14 (중동) 광양시청소년 문화센터 내</td> <td>°청소년문화센터 내</td> <td>°사무실, 상담실, 집단상담실, 심리검사실, 교육실 등</td> </tr> </tbody> </table>	시설명	위 치	규 모	주 요 시 설	광 양 시 청 소 년 문화센터	광양시 광장로 14 (중동)	°연 면 적 : 5,092.45㎡ - 수련시설 2,009.8㎡ - 체육관동 3,082.65㎡	°수련시설 : 소극장, 동아리방, 상담실, 사무실, 음악연습실, 창작공방실 등 °체육관동 :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 샤워실 등	광 양 시 청 소 년 문화의집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055	°연 면 적 : 1,238.4㎡ °대지면적 : 2,308.4㎡	°북카페 및 휴게실, 노래연습실, 댄스연습실, 창작공방, 상담실, 다목적강당, 사무실 등	광 양 시 청 소 년 문화의집	광양시 금호광양시 청 소 년 문화의집 54	°연 면 적 : 1,309.67㎡ °대지면적 : 7,128.8㎡	°노래연습실, 댄스연습실, 창작공방, 상담실, 다목적강당, 사무실 등	광 양 시 청 소 년 상담복지 센 터	광양시 광장로 14 (중동) 광양시청소년 문화센터 내	°청소년문화센터 내	°사무실, 상담실, 집단상담실, 심리검사실, 교육실 등
시설명	위 치	규 모	주 요 시 설																																						
광 양 시 청 소 년 문화센터	광양시 광장로 14(중동)	°연 면 적 : 5,092.45㎡ - 수련시설 2,009.8㎡ - 체육관동 3,082.65㎡	°수련시설 : 소극장, 동아리방, 상담실, 사무실, 음악연습실, 창작공방실 등 °체육관동 :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 샤워실 등																																						
광 양 시 청 소 년 문화의집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055	°연 면 적 : 1,238.4㎡ °대지면적 : 2,308.4㎡	°북카페 및 휴게실, 노래연습실, 댄스연습실, 창작공방, 상담실, 다목적강당, 사무실 등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광 양 시 청 소 년 상담복지 센 터	광양시 광장로 14 (중동) 광양시청소년 문화센터 내	°청소년문화센터 내	°사무실, 상담실, 집단상담실, 심리검사실, 교육실 등																																						
시설명	위 치	규 모	주 요 시 설																																						
광 양 시 청 소 년 문화센터	광양시 광장로 14 (중동)	°연 면 적 : 5,092.45㎡ - 수련시설 2,009.8㎡ - 체육관동 3,082.65㎡	°수련시설 : 소극장, 동아리방, 상담실, 사무실, 음악연습실, 창작공방실 등 °체육관동 :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 샤워실 등																																						
광 양 시 청 소 년 문화의집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055	°연 면 적 : 1,238.4㎡ °대지면적 : 2,308.4㎡	°북카페 및 휴게실, 노래연습실, 댄스연습실, 창작공방, 상담실, 다목적강당, 사무실 등																																						
광 양 시 청 소 년 문화의집	광양시 금호광양시 청 소 년 문화의집 54	°연 면 적 : 1,309.67㎡ °대지면적 : 7,128.8㎡	°노래연습실, 댄스연습실, 창작공방, 상담실, 다목적강당, 사무실 등																																						
광 양 시 청 소 년 상담복지 센 터	광양시 광장로 14 (중동) 광양시청소년 문화센터 내	°청소년문화센터 내	°사무실, 상담실, 집단상담실, 심리검사실, 교육실 등																																						

광양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7. 29.)에서 의결된 **광양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8월 18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1935호

붙임 : 광양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광양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 광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광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광양시 가족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① 명칭은 “광양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센터는 광양시 동광 2길 9-7(중동)(가족문화센터 내)에 설치한다.

제3조(기능)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2. 성평등 가족문화 확산
3.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4. 「광양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
5. 1인 가정,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통합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가족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시설)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조직 등)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센터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이나 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전문 인력의 자격 기준 및 소관 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센터는 지역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등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르되, 위촉직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시설을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센터의 위탁운영을 위하여 광양시 가족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위탁 심사
2. 위탁의 취소 여부
3. 계약갱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가족서비스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가족서비스 업무 담당과장
2.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사회복지관련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가족서비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외국인지원 서비스 관련 비영리단체의 장
6. 센터 이용자 대표 1명
7.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8. 그 밖에 가정·복지·여성분야 전문가 등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⑦ 위원회는 각종 위탁신청서류의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해야 하
며,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 심사 및 현장 확인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가족센터
지원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
피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 선정 기준) ① 수탁자는 공개모집으로 하며,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및
센터 평가 결과
2. 가족관련 사업 추진 실적, 운영계획의 적정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시와 체결한 위·수탁 약정서,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당해연도 1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익년도 1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 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여성가족부의 연도별 가족사업안내 지침을 따른다.

제12조(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절차 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장으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보고를 받거나 위탁사무를 조사한 결과 시정해

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수탁자의 사유로 센터 운영 능력을 상실(파산 또는 해산)하였다고 판단될 때
5. 수탁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센터를 관리·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6. 그 밖에 수탁자가 공익상 센터를 운영할 수 없거나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한 위탁계약(협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광양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 가족센터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광양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7. 29.)에서 의결된 **광양시 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8월 18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1936호

붙 임 : 광양시 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광양시 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및 일반운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가족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편적·포괄적 가족지원서비스 제공과 건전한 문화 활동 장려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양시 가족센터 : 「광양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광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광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광양시 생활문화센터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광양시 공동육아나눔터 :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설치) 명칭은 광양시 가족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광양시 동광2길 9-7(중동)에 둔다.

제4조(운영시설)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광양시 가족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교육실, 상담실, 다목적 가

족소통·교류공간, 자료실 등

2. 광양시 생활문화센터(마주침공간, 방음공간, 마루공간, 공동체부엌, 가족공연장 등)
3. 광양시 공동육아나눔터
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제5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양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사업
2.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의 지원
3.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육아복지 지원
4. 그 밖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생활문화 진흥 및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관리위탁) ① 센터는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사용 수익허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무상으로 사용 수익허가할 수 있다.

제8조(이용시간 및 휴무일) 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공휴일로 한다.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사항은 광양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2장 광양시 가족센터의 운영

제9조(운영) 광양시 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3장 광양시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제10조(시설의 사용신청) ① 센터 시설 중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마루공간(연습실)
2. 가족공동체부엌
3. 방음공간(동아리실)
4. 방음공간(밴드실)
5. 가족공연장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

은 사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결정하되 광양시민을 우선으로 하여 결정하고,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허가 사항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그 사용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사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사용 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사용료 등) ①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주관하는 공식행사
2. 센터 입주기관에서 주관하는 공식행사
3. 그 밖에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행사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한다.
단,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5.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7.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
8.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1가구 2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정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시설의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제14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시설의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 및 장비에 특별한 설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설비의 설치 및 원상복구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행사 및 공연 등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인적·물적 사고

를 대비한 안전조치 및 사전 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제4장 광양시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

제15조(운영) 광양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 설 사 용 료 (제12조 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	금 액(원)	비고(면적)
마루공간(연습실)	1시간	5,000	59.34㎡
가족공동체부엌	1시간	15,000	103.28㎡
방 음 공 간 (동 아 리 실)	1시간	3,000	19.35㎡
방 음 공 간 (밴 드 실)	1시간	5,000	19.35㎡
가 족 공 연 장	1시간	10,000 (냉·난방기 사용시 : 별도 5,000원)	327.37㎡

- ※ 1) 시설 사용은 해당기기 이용이 가능한 자 혹은 이용이 가능한 자가 동반된 경우에만 사용을 허가한다.
- 2) 모든 대관은 운영 시간 내에만 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센터에서 사전에 허가한 경우는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다.
- 3)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별표 2]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제13조 관련)

반 환 기 준	반환금액
1. 시설의 특별한 사정, 재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3. 사용일 3일 전에 취소신청을 한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
4. 사용일 2일 전부터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 신청을 한 경우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5.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신청을 한 경우	미 반환

<뒷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광양시 가족문화센터 시설 운영을 위해, 시설 사용 및 내역 확인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해당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2. 개인정보 수집 방법 및 항목

- 수집방법 : 정보주체 동의
- 수집항목 : 성명, 연락처(E-mail), 생년월일(법인번호),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광양시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를 아래의 기간 내에 보유하고 처리합니다.

- 3년 : 성명, 연락처(E-mail), 생년월일(법인번호), 주소
- 1년 : 그 외 정보

4.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시설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인 또는 서명)

광양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7. 29.)에서 의결된 **광양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8월 18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1937호

붙 임 : 광양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광양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광양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광양시·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
2.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지속을 위한 시책
3.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에 대한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 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경력단절여성 등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과 취업 연계
2. 경력단절여성 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의 선정과 지원

3. 취·창업 상담 및 정보 제공
 4. 직업교육훈련 실시 및 지원
 5.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6. 경력단절여성 등의 직업 적응을 위해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7.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기업, 학계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표창)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 또는 사용자와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7. 29.)에서 의결된 **광양시의회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8월 18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1938호

붙 임 : 광양시의회 기본 조례

광양시의회 기본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민주적 의회상 구현과 의정 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광양시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광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에 따라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지방분권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의회의 운영 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한다.

② 의회는 광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의원의 의정활동 원칙) ①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장 의원

제5조(의원 등록) 의원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의석 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광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의 의석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기호순에 의한다.

제7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8조(청가와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 또는 구금 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5조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된 경우에는 청가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 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 ④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한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 ⑥ 의장은 임신 중인 여성위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을 전후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 ⑦ 의장은 의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휴가는 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제9조(의원의 사직) ① 법 제8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라 의회는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③ 의원은 사직하려면 본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사직서를 제출한 의원은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원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청구서의 복사본을 심사 대상 의원에게 송달하되 일정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심사 대상 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이나 기타 사고에 의하여 그 기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장은 다시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심사 대상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0조에 따른 기간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자격상실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심사 청구 의원과 심사 대상 의원에게 송부한다.

제12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법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의장을 경유하여 심사 청구의원과 심사 대상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심사 청구 의원과 심사 대상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대상 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 대상 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회기운영

제13조(회의 일수) 의회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

제14조(연간 의회 운영 일정)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15조(정례회) 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집회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에 그 다음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10일에 집회한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8일에 집회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집회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임시회) ①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사무국장이 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의장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임시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회일 3일 전에 이를 공

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의안의 제출·발의) 법 76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
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
다.

제18조(심의) ① 정례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1. 제1차 정례회 :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 승인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 :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
142조에 따른 예산안 의결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② 임시회에서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하되, 총선거 후 최초
집회하는 임시회에서는 의장, 부의장 선거를 하여야 한다.

제19조(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임시회 집회
일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총선거 후 최초 임시회에는 의장과 부의장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
다.

제4장 의회의 기관 등

제20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
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선거한다.

⑤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는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이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다음 날에 선출한다.

제22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한다.

②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의장 직무대리)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24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한다.

제25조(의장·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26조(사무국)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무국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및 「광양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을 따른다.

제5장 위원회와 위원

제27조(위원회 설치) 의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28조(상임위원회와 위원 정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위원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임위원회 구성 후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궐선거로 충원이 있기까지는 결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수를 그 위원회의 정수로 한다.

1. 의회운영위원회 7명 이내
2. 총무위원회 7명 이내

3. 산업건설위원회 7명 이내

제29조(상임위원회 직무)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제30조(상임위원회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라.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마.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에 관한 사항

2. 총무위원회

가. 기획예산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전략정책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홍보소통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총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바. 경제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관광문화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교육보육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차. 읍·면·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산업건설위원회

가. 안전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물관리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산단녹지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휴양림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② 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제31조(상임위원회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이하 “특별위원”이라 한다)을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제32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 만료되는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3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34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 ③ 특별위원회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안건이나 활동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7명 이내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하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제32조를 따른다.

③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

이라 한다) 1명을 두되 해당 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본회의 보고 전이라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제37조(위원의 선임·개선) ① 상임위원과 특별위원은 의장 추천으로 본

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② 상임위원은 의원의 신청에 의하되 제28조에 따른 위원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조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38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

의장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최일시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9조(부위원장) ① 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그 위원회 위원 가운데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본회의 보고 전이라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심사를 마친 후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소관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1조(서류제출 요구) ① 법 제48조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요구할 때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이 서류제출을 요구할 경우 의장은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서류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2조(전문위원과 공무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은 「광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제43조(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전문가를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고, 의장은 예산 등을 감안하여 인원 또는 활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6장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 답변 등

제44조 (시장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하며,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대리 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과 협의하여 대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 (관계 공무원의 범위) 법 제51조에 따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과장급
3. 법 제126조부터 제130조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
4.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시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5.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제46조(대리 출석·답변) 관계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나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유를 회의 시작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알린 때에는 「광양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을 대리할 수 있다.

제47조(시정질문) ① 의회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의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의 요지가 기재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해당 회의 개의시간 24시간(휴무·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전까지 시장에게 질문요지서가 도달되도록 송

부하여야 한다.

- ③ 의장은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의원을 대상으로 질문할 의원과 그 순서를 정한 후 이를 개의 전에 각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시정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에 대한 일괄답변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얻어 연장할 수 있다.
- ⑤ 일괄질문 일괄답변한 때의 보충질문은 질문 의원만이 할 수 있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8조(서면질문) ① 의원이 시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경우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② 시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려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49조(긴급현안질문) ① 의원은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관한 긴급현안질문(이하 “현안질문”이라 한다)을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현안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출석을 요구하는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을 기재한 질문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의원의 질문요구서를 받은 때에는 질문시간 24시간(휴무·공휴

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전까지 시장에게 질문요지서가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질문요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장이 정한다.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현안질문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는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⑥ 현안질문 시간은 총 60분으로 하고 한 의원의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문시간은 의장의 허가를 얻어 연장할 수 있으며,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⑦ 현안질문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시장 등의 발언)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1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① 의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광양시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장 질서와 경호

제52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 또는 제지를 하거나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 녹화, 촬영 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반입
6.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제1항의 명에 따르지 아니한 의원이 있으면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우면 정회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53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 의사 및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및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54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③ 그 밖에 의회의 경호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 제55조(녹음·녹화 등)**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회의를 제외하고는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대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이하 “녹음 등”이라 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려는 사람은 회의 시작 전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

- 제56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회의를 제외하고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를 광양시의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을 할 수 있다.
- ②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분과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의 조례는 폐지한다.

1. 「광양시의회 회의일수와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3. 「광양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의결, 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광양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7. 29.)에서 의결된 **광양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8월 18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1939호

붙임 :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
정조례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광양시의회가 광양시 행정사무에 대하여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① 광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본회의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한다.

③ 의회는 감사일정, 감사장소, 감사요령 및 감사위원의 편성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감사계획서를 작성한다.

④ 제3항의 감사계획서는 본회의,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작성 하고, 본회의의 검토·의결로 승인 또는 반려한다.

⑤ 광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특정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범위, 조사담당 위원회 등을 기재하고 발의 의원이 연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안이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담당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담당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정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 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본회의 또는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범위·일정, 조사 방법 및 소요경비 등을 담은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의결·승인을 받은 후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하여 의결로써 이를 승인

또는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 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
2.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시장이 위임하거나 위탁(시장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사무는 제외한다)한 법인, 기관·단체 및 개인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법인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시 소관 사무범위

2. 「지방자치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국가와 전라남도의 위임사무 중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7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 대상의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8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은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에 대한 본회의의 검토·의결로 결정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

제10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감사·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

원에게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대하여만 본회의나 감사·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주의 의무) ①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2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증언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확인·통보, 서류의 제출,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의장을 통하여 늦어도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해당 자 또는 해당 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서류제출 또는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요구) ① 의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② 제1항의 요구서에는 제출서류 또는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일시·장소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의 법령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은 우편송달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기관과 직접 전달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대리출석·답변)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을 출석·답변하게 하

려면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 시작 전까지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의장이나 그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49조제4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하게 할 때에는 본회의나 위원회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일의 1일 전까지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불출석 등의 통보) 의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한다.

제16조(증인 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에 증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선서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 전에 그 취지와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전안내 예시문에 준하여 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를」 제8조를 준용한다.

제17조(증언 등의 거부)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 및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거부하는 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16세 미만인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하지 않는다

제18조(증언 등의 범위 및 방식) ① 증언은 요구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되며, 증언이 요구받은 범위를 벗어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언을 제지하거나 증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증인 및 참고인의 증언과 진술은 구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언의 성질이나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서면으로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증인이 증언 중에 서면으로 보충설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및 증인이 이미 증언한 내용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어 이를 서면으로 보충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19조(증인의 보호) 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 또는 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의회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이나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하면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의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증인에게 헌법 및 법률상의 권리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변호인은 감사 또는 조사 장소에서 발언할 수 없으며, 감사 또는 조사에 따른 질서와 품위유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⑤ 변호인이 제4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증인 등의 실비보상) ①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에게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시 공무원
 2. 제5조제2호가 정하는 위임 또는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같은 조 제3호가 정하는 출자·출연 법인의 임직원
-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감사 또는 조사결과 보고) ①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의장에게 감사보고서 또는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본회의에서 행한 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하여는 운영위원장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한다.

② 의회는 감사와 조사 결과에서 시 또는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기관에서 처리해야 하는 사항은 시 또는 기관에 이송한다.

③ 시 또는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

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감사와 조사 결과를 처리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의 변경) 의장은 의결 또는 승인된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변경할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이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기간단축, 장소 및 일정변경, 범위 및 대상기관 등의 축소와 소요경비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증언 등 정정) ① 증인 등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증언과 의견진술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증언과 의견진술내용 등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일 감사 또는 조사종료 전에 증언·의견진술정정서를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공개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조사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6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0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것을 알고도 이를 회피하지 않거나, 제11조에 따른 주의의

무에 위반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27조(과태료)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하고, 과태료 부과결정서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과태료를 부과·징수해야 한다.

제28조(고발) ① 의회는 제16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고발은 그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발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에 의장의 명의로 접수한다.

제29조(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광양시의회 기본조례」 및 「광양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7조제1항 관련)

위 반 행 위 별	과 태 료
1.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가. 해당 감사 또는 조사시 출석거부 3회 이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나. 해당 감사 또는 조사시 출석거부 2회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다. 해당 감사 또는 조사시 출석거부 1회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2. 선서 또는 증언(진술)을 거부한 자	
가. 해당 감사 또는 조사시 선서 또는 증언거부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3.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 제출을 정해진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경우	
가. 해당 감사 또는 조사시 서류 제출을 정해진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 출석요구 불응 1회는 1일 간의 불출석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증인 출석 요구서(제13조 제2항 관련)

귀하

광양시의회가 ○○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귀하를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석하여야 하는 날의 전일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광양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1. 출석일시 : 년 월 일 시
2. 출석장소 :
3. 질문요지 :
4. 기 타 :

 년 월 일

광 양 시 의 회 의 장

참고인 출석 요구서(제13조 제2항 관련)

귀하

광양시의회가 ○○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귀하를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출석하는 때에는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석하여야 하는 날의 전일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광양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년 월 일 시
2. 출석장소 :
3. 질문요지 :
4. 기 타 :

 년 월 일

광 양 시 의 회 의 장

[별지 제3호서식]

증인 선서문(제16조제1항 관련)

선 서

본인은 광양시의회(○○○위원회) ○○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46조 및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소속(주소) :

직위(직급) :

생년월일 :

성명 : (인)

광양시의회의장 귀하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 예시문(제16조제2항 관련)

광양시의회가 ○○○○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출석·선서 또는 증언(의견진술)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증인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2. 증인 출석요구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나 위원회 출석·증언(의견진술)일의 1일전까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증인(참고인)이 증언(의견진술)할 때에 특별한 이유로 비공개 회의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의회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의회(의회사무국)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00-000-0000)

광 양 시 의 회 의 장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부과결정 통보서(제27조제2항 관련)

과태료 부과결정 통보서

광 양 시 장 귀하

광양시의회 ○○○○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였기에 통보하오니 부과·징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부과내역
 - 가. 대 상 자 :
 - 나. 부과금액 :
2. 부과이유
3. 첨부서류
4. 그 밖의 사항

년 월 일

광 양 시 의 회 의 장

광양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7. 29.)에서 의결된 **광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8월 18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1940호

붙임 : 광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를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의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를 “의원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질병”을 “직무상 질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서 정한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치료비 전액”을 “치료비 전액”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서 정한”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으로, “해당되는”을 “해당하는”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요하는”을 “필요로”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6월이내”를 “6월 이내”로, “안날부터 30일 이내에”를 “안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직무”를 “시장은 의원의 직무”로, “해당여부”를 “해당 여부”로, “시장은 광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를 “광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의원”을 “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시본청”을 “시 본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의무직”을 “시 소속 의무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 단서 중 “시소속직원”을 “시 소속 직원”으로, “전보된”을 “전보하였을”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에서 정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 14급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2013.1.23.개정)

②제4조제1항제3호 중 “상해” 기준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생략)

②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날부터 30일 이내에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2013.1.23.일부개정)

제9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은 광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40조에 규정된 -----

----- 해당하는 -----

②-----

----- 필요로 -----.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현행과 같음)

②-----

-- 6월 이내-----

----- 안 날부터 30일 이내 -----

제9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시장은 의원의 직무-----

- 해당 여부 -----

----- 광양시의회의원상해

등보상심의회-----

-----.

②-----

사람 중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2013.1.23.개정)

1. 의원 1명

2. 시본청 관련 실과장 1명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생략)

③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을 위원
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소속직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
기가 만료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2조(심의회위원장의 직무) ①위
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생략)

1. 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 ----

2. 시 본청 -----

3. 시 소속 의무직 -----

4.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

----. ---- 시 소속 직원----
----- 전보하였을 -----

-----.

제12조(심의회위원장의 직무) ①--

----- 총괄한다.

② (현행과 같음)

광양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7. 29.)에서 의결된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8월 18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1941호

붙임 :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광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광양시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윤리강령) 광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은 별지 1과 같다.

제3조 중 “의원”을 “의원이 제2항”으로, “윤리실천규범을”을 “윤리실천규범은”으로, “같이 정한다”를 “같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을 “제43조제3항에 따라 광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 중 “의원은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

조”를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 및 「광양시의회 기본조례」 제30조”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의원은”을 “의원이”로 한다.

제8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령에 따라 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 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 및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제1호의 비위의 정도란 기호(○) 세 번째 중 “법제36조제2항”을 “법제43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광양시의 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u>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u>광양시의 회 의원</u>----- ----- -----.</p>
<p>제2조(윤리강령) 의원은 <u>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대표</u>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u>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u>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u>별지 1과 같이 정한다.</u></p>	<p>제2조(윤리강령) <u>광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u>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은 <u>별지 1과 같다.</u></p>
<p>제3조(윤리실천규범) <u>의원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별지 2와 같이 정한다.</u></p>	<p>제3조(윤리실천규범) <u>의원이 제2항</u>----- <u>윤리실천규범은 ----- 같다.</u></p>
<p>제5조(겸직신고) ① <u>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겸직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u> ② · ③ (생략)</p>	<p>제5조(겸직신고) ① ----- ----- <u>제43조제3항에 따라 광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u>----- ----- -----. ② · ③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p>	<p>④ ----- -----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 ----- -----.</p>
<p>⑤ (생략)</p> <p>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p>	<p>⑤ (현행과 같음)</p> <p>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 및 「광양시의회 기본조례」 제30조----- ----- -----.</p>
<p>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생략)</p> <p>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해야 한다.</p>	<p>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의원이</u> ----- ----- ----- ----- -----.</p>
<p>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p>	<p>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현행	개정안
<p>1. ~ 3. (생략)</p> <p><u><신설></u></p> <p>③·④ (생략)</p> <p>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p> <p>1. (생략)</p> <p>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p> <p>3. ~ 6. (생략)</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법령에 따라 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u></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9조(징계 등) ----- 각 호의 어느 하나-----</p> <p>-----</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 및 제44조제2항-----</p> <p>3. ~ 6. (현행과 같음)</p>

광양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7. 29.)에서 의결된 **광양시의회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2022년 8월 18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1942호

붙 임 :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

광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본문 중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출석수업”을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업”로, “제7조제1항에 따른”을 “ 제7조제1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15일”을 “20일”로 하고, 제7항제3호 중 “15일”을 “30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네 번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를 “1회 3일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전단 중 “시정”을 “의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2조제7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추가 발생되는 일수에 대해서는 해당 재직기간 중 사용할 수 있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특별휴가) ① ~ ⑥ (생 략)</p> <p>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 인 공무원은 「<u>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u>」 제11조제2항에 따라 <u>출석수업</u>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p> <p>⑦ 의장은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 장이 없으면 재직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 휴가 를 허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u>15일</u>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u>15일</u> 4. 장기재직휴가는 <u>네 번으로 분 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u>,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p>제12조(특별휴가) ① ~ ⑥ (현행과 같음)</p> <p>⑤ ----- ----- 「<u>한국방송통신 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u>」에 따라 수업 ----- 제7조제1 항의 ----- ----- ----- -----</p> <p>⑦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u>20일</u> 3. ----- <u>30일</u> 4. ----- <u>1회 3일 이상 사용할하여야 하며</u> ----- -----
<p>⑧ · ⑨ (생 략)</p>	<p>⑧ · ⑨ (현행과 같음)</p>

⑩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시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4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⑪ (생략)

⑩ ----- 의정 -----

-----.

-----.

⑪ (현행과 같음)

광양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7. 29.)에서 의결된 **광양시의회 의정
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2022년 8월 18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1943호

붙 임 :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광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광양시의회”로,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의회의장(이하 의장”을 “광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26명”을 “28명”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광양시의회</u> (이하 “<u>의회</u>”라 한다)의 의정활동과 주요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u>의정자문위원회</u>(이하 “<u>위원회</u>”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능) <u>위원회</u>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회의 자문에 응한다.</p> <p>1. ~ 5. (생략)</p> <p>6. 기타 <u>의회의장</u>(이하 <u>의장</u> 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p> <p>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u>26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③ (생략)</p> <p>제7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1. ~ 5. (생략)</p>	<p>제1조(목적) ----- <u>광양시의회</u>-----</p> <p>-----</p> <p>-----</p> <p>----- <u>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u>-----</p> <p>-----</p> <p>-----.</p> <p>제2조(기능) <u>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u>(이하 “<u>위원회</u>”라 한다)-----</p> <p>-----.</p> <p>1. ~ 5. (현행과 같음)</p> <p>6. --- <u>광양시의회 의장</u>(이하 “<u>의장</u>” -----</p> <p>제3조(구성) ①-----</p> <p>----- <u>28명</u> -----</p> <p>-----.</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7조(위원의 해촉) ----- 각호의 어느 하나-----</p> <p>-----</p> <p>-----.</p> <p>1. ~ 5. (현행과 같음)</p>